

보도시점 2024. 1. 16.(화) 09:00 배포 2024. 1. 16.(화) 08:30
[2024년 특허청 정책 돋보기]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5.1.~) -
- 국가유공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까지 혜택 확대 -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오는 5. 1.(수)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 (면제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 제외)

** (면제요건)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 16.(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8,062명(본인 5,882명, 유족 2,180명), 지원대상자 2,826명(본인 2,245명, 유족 581명) 「출처 : ' 23.11월 기준,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지속 확대>

특허청은 '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 16.(화)부터 2. 26.(월)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특허수수료 세부 내역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개요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훈 (042-481-5460)
		담당자	사무관	최상원 (042-481-8336)
			주무관	전상우 (042-481-8756)



붙임 1

특허수수료 세부 내역

(’24.1.1. 기준, 단위: 원)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일부심사
출원료	전자	국 어 46,000 외국어 73,000	국 어 20,000 외국어 32,000	1디자인마다 94,000	1디자인마다 45,000
	서면	국 어 66,000 외국어 93,000 (20면 초과 1면당 1,000원)	국 어 30,000 외국어 42,000 (20면 초과 1면당 1,000원)	1디자인마다 104,000	1디자인마다 55,000
심사청구료		166,000 (청구범위1항당 51,000 가산)	71,000 (청구범위1항당 19,000 가산)	-	-
우선심사 신청료		매건 200,000	매건 100,000	매건 70,000	매건 70,000
심판 청구료	전자	150,000 (청구범위 1항당 15,000 가산)		1디자인마다 240,000	
	서면	170,000 (청구범위 1항당 15,000 가산)		1디자인마다 260,000	
설정등록료 (1-3년분)		매년 13,000 (청구범위 1항당 12,000 가산)	매년 12,000 (청구범위 1항당 4,000 가산)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
연차 등록료	4-6	매년 36,000 (청구범위 1항당 20,000 가산)	매년 25,000 (청구범위 1항당 9,000 가산)	1디자인마다 매년 35,000	1디자인마다 매년 34,000
	7-9	매년 90,000 (청구범위 1항당 34,000 가산)	매년 60,000 (청구범위 1항당 14,000 가산)	1디자인마다 매년 70,000	1디자인마다매 년 34,000
	10-12	매년 216,000 (청구범위 1항당 49,000 가산)	매년 160,000 (청구범위 1항당 20,000 가산)	1디자인마다 매년 140,000	1디자인마다매 년 34,000
	13-15	매년 324,000 (청구범위 1항당 49,000 가산)	매년 240,000 (청구범위 1항당 20,000 가산)	1디자인마다 매년 210,000 (13-20년)	1디자인마다매 년 34,000 (13-20년)
	16-25		-	-	-

○ 색칠된 부분은 면제 수수료이며, 설정등록료 납부후 연차등록료 즉, 4년차 이후부터는 등록료가 50% 감경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개요

- (내용) 공적으로 부여받은 직무·훈련과 관련되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 제도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직무나 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중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부상을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사례 >

- (A케이스) 육군 수색병으로 근무한 A씨가 훈련 중 발목을 다친 경우
- (B케이스)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구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국가·지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11.9.15.)」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12.7.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73조의2 삭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공무원

- (타 부처 지원내용)

-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월보상금·사망 일시금·취업교육·의료지원·수송시설이용(열차·지하철) 지원 등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3.8.18.법률안 개정진행 중)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